궁도 진흥법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01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 박찬대·노종면·유동수

이훈기 • 김윤덕 • 허종식

맹성규 • 김교흥 • 임호선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울산광역시 반구천 암각화에 선사시대의 활쏘기 문양 기록이 남아 있고,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예의 범절과 심신 수련이라는 시대정신의 전통문화를 함유하고,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상무 정신의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궁도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弓道)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상무 정신의 함양과 건전한여가선용, 명랑한 기풍 진작 및 심신 수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궁도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궁도를 계승, 보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1 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 2. "궁도시설"이란 궁도 경기·수런·연구·공연 등 궁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 3. "궁도단체"란 궁도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궁도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궁 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궁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궁도 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궁도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궁도 진흥의 기본방향
 - 2. 궁도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3. 궁도의 전승을 위한 교육 · 보급에 관한 사항
 - 4. 궁도지도자 및 선수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5. 궁도시설 및 궁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7. 궁도대회 및 스포츠클럽·동회인조직 등의 지원,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8. 궁도 국제교류 협력 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 9. 궁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10. 궁도시설 및 행사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협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궁도의 날) ① 국가는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한다.
 - ② 그 밖에 궁도의 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궁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